
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안내

■ 공급대상

1. 용인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
2.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/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에 해당하는 자
3.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
-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

■ 청약신청 전 유의사항

-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.
(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.)
-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.
- 배우자 분리세대가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한 경우로는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(예 : 청약자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등재 + 계속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2년 등재 시 노부모부양자 신청자격 불인정)
-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-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.
- 계부, 계모는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아니므로 직계존속의 주택소유여부만 판단합니다.
- 특별공급 청약은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하며,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(부부 포함)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■ 당첨자 선정기준

- ① 거주지역 ▶ ② 가점산정기준표 ▶ ③ 추첨

당첨자 선정방법	
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청약 가점 산정 배점 순서대로 대상자 선정	
1	해당 주택건설지역(용인시) 우선
2	청약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[별표1]제2호 나목)
3	동점일 경우 추첨

※ 본 안내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,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